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경계선지능인 관련 법률안

검 토 보 고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허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025호)
-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115호)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298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광 석

목 차

I . 개요	1
II . 총괄 검토	10
1.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내용	10
2. 검토의견	15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21
III . 주요 내용별 검토	25
1. 정의	25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실태조사	28
3. 조기진단 및 개입	33
4. 교육 지원 등	36
5. 고용 및 직업훈련 등	40
6.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44
7. 경계선지능인 및 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	53
8. 부칙	56

I. 개요

1.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제302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허영의원 등 23인
- (2) 제 안 일 : 2024. 8. 21.
- (3) 회 부 일 : 2024. 8. 22.

나. 제안이유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통계적으로 인구의 12~14%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됨. 경계선지능인은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습부진아, 사회부적응자 등의 낙인에 시달리고 있음.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 또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조례별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 규정이 부재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이 법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2)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안 제2조).
-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모든 국민은 경계선지능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함(안 제4조 및 제5조).
- (4)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계선지능인에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 (5) 경계선지능인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는 경계선지능인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 등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지역경제선
지능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음(안 제9조 및 제10조).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자립지원,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양육지원, 교육지원, 보호자 지원 및 평생교육 지
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
지).

(7)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
음(안 제20조 및 제21조).

(8) 맞춤형 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
속으로 중앙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시
·도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둠(안 제22조).

(9)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 역량 강화 및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
련하여야 함(안 제23조).

(1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권익보
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24조).

2.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권철승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11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권철승의원 등 22인
- (2) 제 안 일 : 2024. 8. 23.
- (3) 회 부 일 : 2024. 8. 26.

나. 제안이유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 정도의 사람으로서, 학습·취업·자립생활 등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에 대한 법적 정의와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없음.

반면,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조차도 법적 근거가 부재한 관계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 및 지원 방식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함.

이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교육·자립생활·취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이 법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2) “경계선지능인”을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
-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힘써야 하며, 국민은 경계선지능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함(안 제4조 및 제5조).
- (4)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등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 (5) 경계선지능인 지원서비스 신청과 지원 여부 및 지원서비스 내용의 결정,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승인 등에 관한 절차·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 (6) 경계선지능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보조인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계선지능인의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를 보장함(안 제12조).
-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을 위해 진단서비스 홍보, 조기진단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 연령 이하 미성년자에 대하여 경계선지능인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3조).
- (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교육·돌봄·자립·취업·평생교육·심리상담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 (9)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 (10) 경계선지능인의 맞춤형 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 시·도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둠(안 제23조).

3.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안(의안번호 제329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안상훈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8. 28.
- (3) 회 부 일 : 2024. 8. 29.

나. 제안이유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교육·고용·자립생활 등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조례별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 및 지원 방식이 상이하고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다수 존재하며 경계선지능인의 정의와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이 부재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가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교육·고용·자립생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이 법은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2) 이 법에서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안 제2조).
-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모든 국민은 경계선지능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함(안 제3조 및 제4조).
- (4)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조기진단 및 개입, 양육지원, 교육지원, 자립지원,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 지원, 평생교육 지원 및 의료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경계선지능인을 발굴하고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6조).
- (7)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17조).

Ⅱ. 총괄 검토

1.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 제정안은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이들의 자립과 자아실현 및 사회참여를 제고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을 목적으로,

각각 4개의 장과 32개의 조문(허영의원안), 5개의 장과 30개의 조문(권칠승의원안), 4개의 장과 25개의 조문(안상훈의원안)으로 구성되어 있음.

□ 3건의 제정안은 모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라 함)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계선지능인으로 정의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자립지원, 교육지원, 고용지원 등과 같은 전반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은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허영의원안과 권칠승의원안의 경우는 대체로 유사한데 비해, 안상훈의원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해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허영의원안·권칠승의원안에서는 경계선지능인의 권리를 총칙에서 따로 명시하고 있으나, 안상훈의원안에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 **허영의원안·권칠승의원안**에서는 경계선지능인으로서 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에게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을 해야 하며, 시장등으로부터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아야 하지만, **안상훈의원안**에서는 이 같은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 **허영의원안·권칠승의원안**에서는 시장등이 신청을 받은 경우,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지만, **안상훈의원안**에서는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 **허영의원안·권칠승의원안**에서는 중앙 및 지역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각각 중앙 및 시·도 경계선지능학생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안상훈의원안**에는 이와 같은 지원센터 및 교육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 각 제정안 간 체계 비교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허영의원안	권철승의원안	안상훈의원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경계선지능인의 권리)	제3조(경계선지능인의 권리)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	제4조(국민의 책무)
제5조(국민의 책무)	제5조(국민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기본계획 수립 등
제2장 기본계획 수립 등	제2장 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경계선지능정책의 총 괄·조정)
제7조(기본계획 및 시행계 획)	제7조(기본계획 및 시행계 획)	제7조(기본계획 및 시행계 획)
제8조(실태 조사)	제8조(실태 조사)	제8조(실태 조사)
제9조(지원신청 등)	제9조(지원신청 등)	제3장 경계선지능인 지원 및 서비스
제10조(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제10조(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제9조(조기진단 및 개입)
제11조(경계선지능인과 지 원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	제11조(경계선지능인과 지 원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	제10조(양육지원)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허영의원안	권철승의원안	안상훈의원안
제3장 경계선지능인 지원 등	제3장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	제 11조(교육지원)
제12조(형사·사법 절차상 권리 보장)	제12조(형사·사법 절차상 권리 보장)	제 12조(자립지원)
제 13조(조기진단 및 개입)	제 13조(조기진단의 실시 등)	제 13조(고용촉진 및 직업훈련 지원)
제 14조(자립지원)	제 14조(교육 및 활동·돌봄 서비스 지원)	제 14조(평생교육 지원)
제 15조(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제 15조(자립지원)	제 15조(의료지원)
제 16조(양육지원)	제 16조(취업 및 고용 지원)	제 16조(협력체계 구축 및 사례관리)
제 17조(교육지원)	제 17조(평생교육 지원)	제 17조(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18조(보호자 지원)	제18조(심리상담 지원)	제 4장 보칙 및 벌칙
제 19조(평생교육 지원)	제 19조(자녀양육 지원)	제 18조(비밀유지 의무)
제20조(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제4장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등	제 19조(지도와 감독)
제21조(경계선지능인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20조(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제 20조(보고와 검사)
제22조(경계선지능인교육운영 위원회)	제21조(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임무)	제 21조(위임·위탁)
제4장 보칙 및 벌칙	제22조(경계선지능인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 22조(벌칙)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허영의원안	권철승의원안	안상훈의원안
제23조(비밀유지 의무)	제23조(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	제23조(벌칙)
제24조(지도와 감독)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24조(양벌규정)
제25조(보고와 검사)	제24조(비밀유지 의무)	제25조(과태료)
제26조(위임·위탁)	제25조(지도와 감독)	부 칙
제27조(벌칙)	제26조(보고와 검사)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8조(벌칙)	제27조(위임·위탁)	
제29조(양벌규정)	제28조(벌칙)	
제30조(과태료)	제29조(양벌규정)	
부 칙	제30조(과태료)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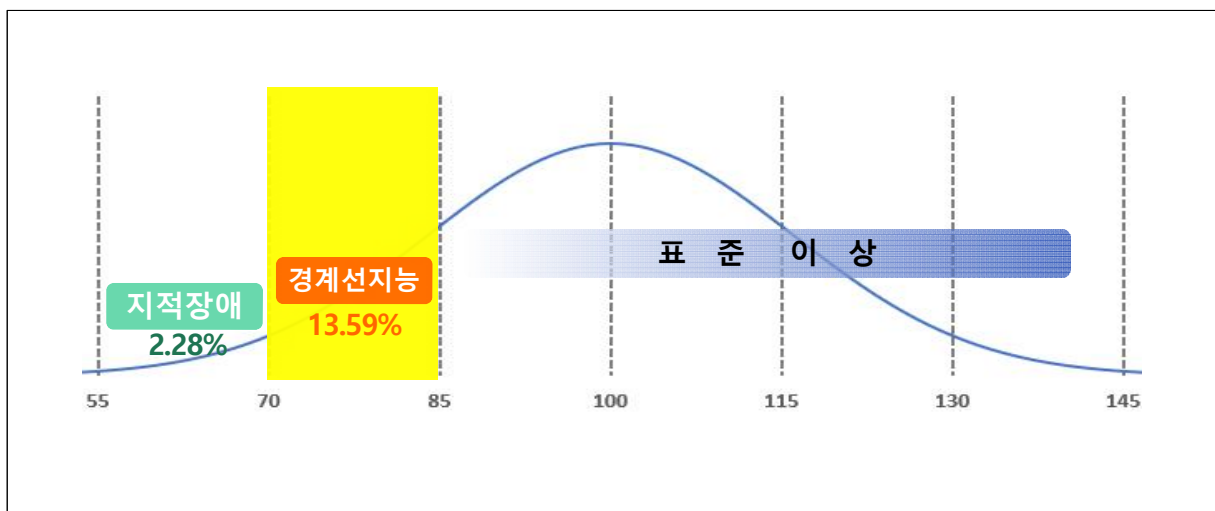
주1): 음영 표기된 조문은 보칙과 벌칙 규정을 제외한 실제규정 중 안상훈의원안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조문

2. 검토의견

□ 경계선 지능(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이란 71 ~ 84 사이의 지능지수로 정의되며, 지능의 정규분포를 고려할 때 전 인구의 13.59%가 이에 속함.¹⁾

- 이를 토대로 추정하면, 우리나라의 총인구 중 경계선지능인은 약 699만 명으로 추정할 수 있음.²⁾

< 지능의 정규분포 곡선 >



자료: 교육부(2024.7.3.).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보도자료]중 별첨.

□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합의된 개념이나 정의가 없어서 느린 학습자(slow learner)로도 불리우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특정 장애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학습 및 교육지도를 일반 교육과정 속에서 받고 있음.³⁾

1) 신진숙. (2010). 지적장애아 교육. 서울: 양서원.

2) 국회입법조사처. 「경계선 지능인의 현황과 향후 과제」, 이슈와논점. 2023. 6.

3) 김용훈. (2023). 경계선지능의 개념 정의의 재구조화 및 교육지원 체계 연구. 발달장애연구 (KADD), 27(1), 1-17.

- 미국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 협회에서는 1961년 제6차 정의까지는 경계선 지능 범주에 속하는 사람도 지적장애로 판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았지만,
- 1973년 제7차 정의에서는 경계선 지능을 가진 개인들(individuals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을 지적장애 범주에서 제외한 바 있음.⁴⁾
- 미국 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에서 발간하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5(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 DSM-5)에서는 경계선지능인을 특정 지능지수로 정의하지 않고 임상적 주의가 필요하거나 개인의 치료와 예후에 영향을 주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음.⁵⁾

□ 경계선지능인은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적장애의 기준인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⁶⁾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현행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의사소통 과정, 사회활동 등에서 비장애인과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아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어 보이나, 학교나 직장에서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대부분의 공적인 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⁷⁾

- 특히, 법적으로는 장애인 또는 특수교육대상자로 등록되지 못하

4) 변관석, & 신진숙. (2017). 경계선 지능에 관한 국내연구 동향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9(1), 79-109.

5) 구슬이. (2024).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정책 및 입법동향과 과제.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문. 국회입법조사처.

6) 「장애정도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중 “6. 지적장애 판정기준”

7) 다만, 시설보호아동, 기초학력부진학생 등 일부 취약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에서는 경계선지능아동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음(시설보호아동: 보건복지부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기초학력부진학생: 교육부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기 때문에 교육훈련 지원이나 취업에 관한 복지 혜택을 거의 받을 수가 없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가지는 경우가 비장애인은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지적인 문제가 더 있을 수 있는 지적장애인과 비교해서도 적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음.⁸⁾

□ 현재 우리나라에는 경계선지능인의 개념과 이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음.

- 다만, 최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376호)이 발의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음.⁹⁾

□ 참고로, 지난 제21대 국회(2020년~2024년)에서는 경계선지능인과 관련한 1건의 결의안과 4건의 법안이 제출된 바 있으며, 이 중에서 2건의 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소관으로 하여 심사되었으나, 모두 임기만으로 폐기된 바 있음.

< 제21대 국회 경계선지능인 관련 결의안 및 법안 제출 현황 >

안민석의원	허영의원	최영희의원	강기윤의원	안민석의원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느린 학습자(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2120017)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212109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2122534)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지원에 관한 법률안 (2123713)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2126168)

주 1: 괄호 안은 의안번호

8) 강옥려. (2016). 경계선급 지능 아동의 교육: 과제와 해결 방안. 한국초등교육, 27(1), 361-378.

9) 동 법안은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 4개(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15개(강릉시, 전주시, 서울시 강북구, 노원구 등)가 제정되어 시행 중으로 파악되고 있음(참고자료 1: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¹⁰⁾

- 특히 서울시의 경우는 2022년도에 최초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및 종합계획(2023년~2025년)에 따라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 중임(2024회계연도 기준 24.5억원).¹¹⁾

□ 이 같은 상황에서 발의된 3건의 제정안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개념을 정하고, 이들의 권리성을 강화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기진단, 교육, 자립생활, 취업 등의 지원서비스를 보다 개별화되고, 장기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임.

□ 다만, 각 제정안은 경계선지능인의 정의, 중장기적 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실태조사 실시 등에 있어서는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

조기진단 및 개입, 교육지원, 고용 및 직업훈련 등과 같은 구체적인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10)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하고 있지만, 이는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학교에 재학 중인 ‘학교 내 학생’에 게만 특화된 조례라는 점에서 위 사례에서는 제외함.

11) 교육부(2024.7.3.).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보도자료]중 별첨.

전달체계와 관련하여서도 중앙 및 지역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경계선지능인교육운영위원회 또는 해당기관 관련 조항의 부재 등 차이가 있음.

- 참고로, 경계선지능인과 관련하여 각 제정안과 같이 국가 차원에서 전달체계 및 조기진단·취업·교육·직업훈련 등 전반적인 지원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일본의 경우 교육, 스페인은 고용과 관련한 지원을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일본 및 스페인의 경계선지능인 지원 정책 사례>

<일본>¹²⁾

-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제140조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서 특별지도를 필요로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수업은 통상 학급에서 실시하면서 장애에 따른 특별지도를 통급지도교실에서 실시하는 ‘통급에 의한 지도’를 시행하고 있음.
- ‘통급에 의한 지도’의 대상이 되는 학생은 시각장애인, 난청자, 지체장애인, 병약자, 언어장애인, 정서장애인, 자폐증, 학습장애인, 주의결함다동성장애인¹³⁾으로, 지적장애인은 포함되지 않음.
- 지도의 대상 중 학습장애인은 경계선지능인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며, 일본의 문무과학성은 학습장애를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지적 발달이 뒤처지는 않지만,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계산하거나, 추론하는 능력 중 특정 것의 습득과 사용에 현저한 어려움을 나타내는 다양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통급에 의한 지도’를 실시하는 경우, 대상 학생이 재적하는 학교에서 편성한 교육과정을 기초로 하여 특별교육과정을 편성해 지도를 실시하며, 학습장애인의 지도시간은 연간 10시간~280시간으로 정하고 있음.

12) 국회입법조사처, 「경계선 지능인의 현황과 향후 과제」, 이슈와논점, 2023.6.

13) 아동기의 지속적인 주의력 부족으로 산만함, 놀이 및 학습 장애, 감정조절 장애에 의한 충동적 과다활동

<스페인>¹⁴⁾

- 2021년, 스페인 정부는 「경계선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고용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에 관한 입법왕령」¹⁵⁾을 제정하여 ‘경계선지능인’을 장애 판정척도 20%~32%¹⁶⁾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2,000유로의 보조금 지급하도록 함

을 보이는 소아정신질환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의미함.

14) 국회입법조사처 제출

15) 입법왕령(Real Decreto Legislativo): 행정부가 입법부에서 위임받아 제정하는 법규로, 입헌군주제인 스페인에서는 그 명칭을 왕령(Real)으로 함.

16) 33% 이상은 지적장애인으로서 지원을 받음.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허영의원안·권칠승의원안·안상훈의원안)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 주기별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 촉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법안 취지에 공감

□ 다만, 법안 적용 대상인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원내용 결정을 위해서는 서비스 욕구 파악, 전달체계 수립 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전문가·이해당사자·관계부처 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유사법안에 대해 장애계 일부의 반대의견이 있었음

□ 경계선지능(IQ 71~84)에 국한하여 지원대상을 정하기보다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학습 및 사회참여, 자립생활이 어려운 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맞춤형 기준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음.

나. 기획재정부

□ (허영의원안·권칠승의원안·안상훈의원안) 경계선지능인의 정의와 개념 관련, 지원대상, 지원필요성, 해외 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연구** 등이 선행된 이후 법률로 제정이 필요

* OECD 등 주요국 중 경계성 지능인 지원 관련 법령을 제정한 국가가 없는 것으로 파악

** 복지부는 관련 실태조사 '24말까지 진행 중

- 구체적인 기준 등에 대해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상태로 제정 사항 후 구체화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 발생 우려

□ 현재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특수교육, 자립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원 중

- 기존 지원체계와 유사중복 등 검토하여 법률 제정 필요

다. 교육부

□ (허영의원안·권칠승의원안·안상훈의원안) 경계선지능인에 대해서는 지능지수 측면에서 통용되는 기준(IQ 71~84)만 있을 뿐, 행동 특성 등을 반영한 구체적 범위와 판단기준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으로, 경계선지능인의 범위,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 지원규모 등에 대한 검토 및 사회적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할 것임.

- 정부는 ‘경계선지능인 지원방안’(2024.7. 부처합동)에 따라 실태조사(복지부)를 실시하고 경계선지능인의 삶의 영역별 실태 및 정책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며, 별도의 법 제정은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정책수요를 현행 법체계 하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

라. 고용노동부

□ (허영의원안) 고용 및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은 다 법률 예시*와 같이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원 주체로 명시할 필요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 등

마. 법무부

- (허영의원안·권칠승의원안)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 신뢰관계인의 동석 등 보호자를 지원하려는 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
 - 다만, 유사한 장애인·아동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보조인을 선임하는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포함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바. 장애인단체 등¹⁷⁾

- 장애인단체 등에서 각 제정안에 대해 제출한 의견들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함.
 - 대부분의 장애인단체에서는 경계선지능인이라는 용어로 인해 낙인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기보다는 기존 「장애인복지법」 등의 법률 개정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함.

17)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단법인해냄복지회, 대경사회복지연대

허영의원안	권철승의원안	안상훈원안
• <u>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따라 본 법안이 제정되는 것에 찬성</u>		
• 기존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 역시 성숙하지 못함은 물론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u>‘경계선지능인’이라는 새로운 계층의 정의, 규정이 모호하며 사회적 낙인 초래</u>		
• <u>‘경계선지능인’이란 용어 자체로 낙인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필요하다면 심하지 않은 지적장애인으로 등록하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u>		
• <u>‘경계선지능인’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그들을 조명해야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관련 법률안을 제정하는 것은 또 다른 낙인을 야기하므로, 기존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애의 범주를 확대하고 지역 내 장애인재활시설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계획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것으로 판단</u>		
• 별도의 법안 제정은 <u>‘경계선지능인’이라는 낙인이 우려되며, 오히려 현재 장애인 서비스 인프라와의 연계나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장애인의 범주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u>		
• <u>경계성지능인에 대한 지원방안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개별법안으로 제정하는 것보다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필요한 내용을 담는 것이 바람직</u>		
• <u>‘경계선지능인’이라는 또 다른 장애인을 생성하게 되어 장애인단체, 장애인 학계, 관련기관 등 갈등 촉발 예상되므로, 경계선지능인을 ‘지적장애(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추가하거나 ‘경계선지능장애인’을 신설하는 법령 개정 제안</u>		

Ⅲ. 주요 내용별 검토

1. 정의

허영의원안	권철승의원안	안상훈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 <u>경계선지능인</u> ”이란 「 <u>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u>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u>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 <u>경계선지능인</u> ”이란 <u>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u> 으로서 「 <u>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 <u>경계선지능인</u> ”이란 「 <u>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u>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u>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각 제정안에서는 경계선지능인의 개념을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사실상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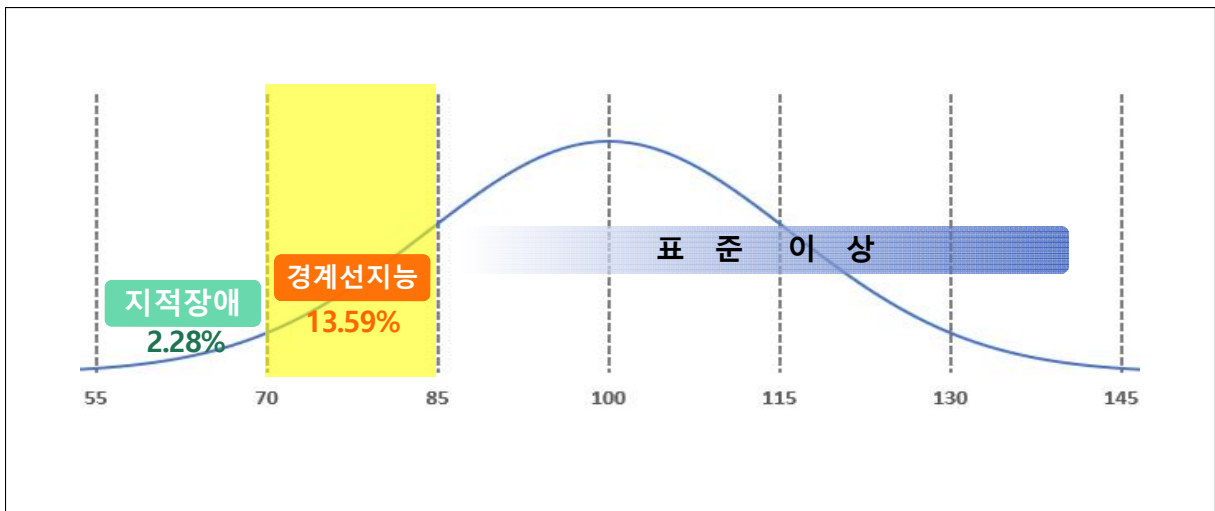
□ 통상 경계선지능인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하위 법령¹⁸⁾에서 정하는 지적장애 기준인 ‘지능지수 70 이하’보다는 높지만, 평균보다 다소 낮은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음.

- 지능지수는 평균 100, 표준편차 15인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인(-2 표준편차 이하)보다는 지능이 높으

18) 「장애정도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중 “6. 지적장애 판정기준”

나 -1 표준편차 미만인 사람으로, 표준정규분포표에 따르면 전 인구의 약 13.59%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함.

< 지능의 정규분포 곡선 >



자료: 교육부(2024.7.3.).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보도자료]중 별첨.

□ 각 제정안에서는 경계선지능인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① 발달장애인을 제외하고, ② 구체적인 지능지수 수치를 요건에 적시하지 않으면서,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별도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의 경우 이미 등록장애인으로서 각종 복지서비스 등을 지원받고 있다는 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개념 정의가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명확하게 인식·공유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계선지능인에서 발달장애인을 제외하고, 그 외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각 제정안의 경계선지능인 정의 규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임.

- 다만, 현재 추정되는 잠재적 대상자의 규모가 전 인구의 13.59%에 달할 수 있는 만큼 법의 현실적 적용을 위해서는 그 대상자를 상당히 구체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임.
- 따라서 경계선지능인의 법령상 개념 정의와 관련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진행 중인 「경계선 지능인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8.~12.) 결과를 참고하여 의학계, 교육계, 장애인 관련기관 및 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의 논의 과정을 거친 후, 이를 종합하여 신중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경계선지능인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실태조사

허영의원안	권칠승의원안	안상훈의원안
제7조(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애주기별 경계선지능인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자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애주기별 경계선지능인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의 교육·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자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2.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생애주기별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4. 경계선지능인 지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

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한 후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추진실적의 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공

영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그 평가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와 평가결과의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계선지능인에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공

⑦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계선지능인에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 · 단체는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 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의 실시 및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 · 단체는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 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

□ 각 제정안에서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5
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이 기본계획에
따라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
행해야 하며,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에 관한 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
적으로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기본체계 및 과학적
정책 실시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임.

- 참고로, 소관부처에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규율 방식은 「아동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 기
본법」 등에서 그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음.

「아동복지법」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2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아울러,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각 제정안은 “생애주기별 경계선지능인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등의 내용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 시행 후, 1년 이내 이를 구체화하기에는 어려운 사항들이 있어 보이므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성급하게 기본계획이 형성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조기진단 및 개입

허영의원안	권철승의원안	안상훈의원안
제13조(조기진단 및 개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방법의 개발, 미성년인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진단검사 실시, 조기진단 전문인력 양성 등 <u>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u> ②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성년자가 경계선지능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그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단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u>결과를 해당 미성년자와 그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며, 결과에 따라 지원서비스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역경계선지능인센터로 연계하여야 한다.</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기진단 실시 및 지원	제13조(조기진단의 실시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조기진단 전문인력 양성 등 <u>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u> ②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절차에 따라 일정 연령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경계선지능인 여부를 판정하는 진단검사(이하 “경계선지능인 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u> ③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진단검사 결과를 해당 미성년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원서비스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로 연계하여야 한다.</u> ④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및</u>	제9조(조기진단 및 개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진단검사 실시, 조기진단 전문인력 양성 등 <u>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경계선지능인 진단 결과를 경계선지능인과 그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며, 지원서비스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등에 필요한 사항은 <u>보건복지부령</u> 으로 정한다.	제3항에 따른 경계선지능인 진단검사의 실시와 검사결과의 통지 및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연계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u>대통령령</u> 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

□ 각 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정책 수립 강구 의무를 공통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검사 도구 개발, 정보 제공 및 홍보, 진단검사 실시,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허영의원안**에서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권칠승의원안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반면, **안상훈의원안**의 경우는 진단 검사에 대한 주체 및 구체적 절차와 비용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진단 결과 통지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은 경계선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을 신속하

게 받게 함으로써, 성인이 되어서 겪을 어려움을 줄이고,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범죄, 빈곤 등과 같은 문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가족의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 그러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차이가 있는데,

특히, 권칠승의원안에서는 일정 연령 이하 미성년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검사 인원과 예산 규모 등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면, ‘경계선지능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의 신청’과 같은 진단검사 실시 요건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이 같은 ‘조기진단 및 개입’에 관해서는 「발달장애인법」의 유사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는데, 동 법에서는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검사 비용 지원, 정보제공, 가족상담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에서 발달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에 대하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협력하여 해당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발달장애의 예방·치료에 관한 정보제공, 영유아의 정상발달 및 양육방법에 관한 정보 제공, 가족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의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교육 지원 등

허영의원안	권철승의원안	안상훈의원안
제14조(교육 지원) ①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인 아동·청소년(이하 “경계선지능학생”이라 한다)의 나이, 수학능력(修學能力),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계선지능학생이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②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학생에게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u> ③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실시하는 학교에 그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④ <u>제1항에 따른 맞춤형 교육 지원, 제2항에 따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u>	제14조(교육 및 활동·돌봄서비스 지원) ①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인 아동·청소년(이하 “경계선지능학생”이라 한다)의 나이, 수학능력(修學能力) 및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계선지능학생이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②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학생 방과 후 활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u> ③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계선지능학생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하여 그 맞춤형 교육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 ④ <u>제1항에 따른 맞춤형 교육 지원, 제2항에 따른 방과 후 활동·돌봄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u>	제11조(교육지원) ①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인 아동·청소년(이하 “경계선지능학생”이라 한다)의 나이, 수학능력(修學能力),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계선지능학생이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②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계선지능학생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 ③ <u>제1항에 따른 맞춤형 교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교육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u>	<u>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u>	
-----------------------------	----------------------------------	--

□ 각 제정안은 경계선지능학생(경계선지능인인 아동·청소년)이 나이, 수학적능력,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각각 방과 후 활동서비스 또는 방과 후 활동·돌봄서비스 제공 및 이에 대한 예산 지원과 하위법령 제정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 각 제정안 간 교육지원, 교육 및 활동·돌봄서비스 지원 비교 >

구분	지원대상	지원 서비스	예산 지원	하위 법령
허영의원안	경계선지능학생	맞춤형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맞춤형 교육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실시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 내 지원할 수 있음</u>	보건복지부, 교육부 공동부령
		방과 후 활동서비스		
권철승의원안	경계선지능학생	맞춤형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하여 그 맞춤형 교육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방과 후 활동·돌봄서비스	-	

안상훈의원안	경계선지능학생	맞춤형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계선지능학생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대통령령
--------	---------	--------	--	------

□ 개정안과 유사하게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 법률이 몇 가지 있는바, ① 「초·중등교육법」¹⁹⁾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지적, 자폐성장애 등 포함)²⁰⁾는

19)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3.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⑥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감독 및 지원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⑧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및 제7항에 따른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⑨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학생이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⑩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정보 수집 범위, 방법, 절차, 보존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아니지만 성격장애나 지적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② 「기초학력 보장법」²¹⁾에서는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각각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 경계선지능인은 그 범위가 넓어서 전 국민의 13.59%가 해당될 수 있으므로, 학생층의 비율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경계선지능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기존 법률에 따른 특수교육을 활용하는 것이 주된 추진 방향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측면에서 앞서 언급한 「초·중등교육법」과 「기초학력 보장법」에서 경계선지능학생에 대한 특수교육의 명시적 근거를 신설하거나, 제정안에 양 법률에서 지원하고 있는 교육서비스에 경계선지능학생이 포함되도록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21)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①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 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한 교육·상담을 실시하거나 학교 외부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학습지원 담당교원,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이 함께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특별한 학습지원이 필요한 교과목의 수업에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학습지원교육 및 보조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고용 및 직업훈련 등

허영의원안	권철승의원안	안상훈의원안
제16조(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직업 소개,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게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 지	제16조(취업 및 고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이 그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직업능력 평가 등을 실시하고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업 지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업 지도를 할 때에 특별히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지도 실시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	제13조(고용촉진 및 직업훈련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 등

<u>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u>	<u>선지능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기준에 따라 고용지원을 할 수 있다.</u> ④ <u>고용노동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의 희망·적성·능력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경계선지능인에게 적합한 직업을 알선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간에 구인·구직 정보 교류의 활성화를 꾀하고, 경계선지능인의 취업알선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취업알선전산망을 구축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u> ⑤ <u>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취업알선전산망 구축 등의 조치를 강구할 때에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u>	<u>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

□ 각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과 같은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명시하면서, 규정 방식(의무 또는 재량),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주관 부처, 하위법령 제정 등에 관한 사항에서는 아래와 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각 제정안 간 고용·취업 및 직업훈련 지원 비교 >

구분	지원 서비스	하위 법령
허영의원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업소개,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등 고용촉진 <u>지원을 할 수 있음</u> <u>보건복지부장관이</u> 직업훈련을 <u>지원할 수 있음</u>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한 후, 보건복지부령
권철승의원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u>강구해야 함</u> <u>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u> 직업 지도를 <u>할 수 있음</u> <u>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u> 경계 선지능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 지원을 <u>할 수 있음</u> <u>고용노동부장관은</u> 취업알선전산망 구축 등을 <u>강구해야 함</u>	대통령령
안상훈의원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u>강구해야 함</u>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 및 직업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u>강구해야 함</u>	대통령령

□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필요 조치 강구의무와 관련하여 **안상훈의원안**과는 달리 **허영의원안**과 **권철승의원안**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을 주체로 지원서비스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음.

다만, 직업훈련에 관한 기본법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 법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공동소관임을 고려하면, **허영의원안**안에서와 같이 직업훈련의 지원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 단독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이를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와 이들 부처 공동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또한, 경계선지능인의 범위는 정상인에 가까운 사람부터 지능부족이 상당히 정상범주에서 먼 사람까지 다양할 것이므로, 모든 경계선지능인을 지원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그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여지를 둘 필요가 있어 보임.
- 한편,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 지원 주체로 고용노동부 장관을 함께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허영의원안 제16조제2항).

6.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허영의원안	권철승의원안
제20조(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①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u>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시·도지사는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u> ② <u>중앙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 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연구수행 지원 2. 경계선지능인 조기 진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경계선지능인이 이용 가능한 복지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	제20조(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① <u>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u> ② <u>시·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할 수 있다.</u> ③ <u>시·도지사는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경계선지능인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u> ④ <u>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⑤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u>

공 4.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지원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침·편람 마련 및 교육지원 5.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6.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 개발 7. 경계선지능인 권리침해의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 지원 8.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u>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 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개인별지원 계획 수립 2.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지원 정보 제공 및 연계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지원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상담·교육 지원 4. 경계선지능인 조기진단 실시 및 지원 정보 연계 5. 경계선지능인 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정보 관리 6. 경계선지능인의 자조모임 지원 7.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대한 사례관리 8. 경계선지능인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9. 경계선지능인 권리침해 접수 및	<u>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제21조(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임무) ① <u>중앙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 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연구수행 지원 2. 경계선지능인이 이용 가능한 교육·취업·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침·편람 마련 및 교육지원 4.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5.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7. 경계선지능인 권리침해의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 지원 6.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지원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u>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 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개인별지원 계획의 수립 2.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교육·취업·복지지원 정보 제공 및 연계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경계선지능인에게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 축적 및 관리 5.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견과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6. 경계선지능인 및 그 가족에 대한
--	---

지원 10.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u>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내 경계선지능인의 수 및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와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 ⑤ <u>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중앙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및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u>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장 및 소속 직원의 자격·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상담지원 7. 경계선지능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례관리 8. 제12조에 따른 경계선지능인의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을 위한 사항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u>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u>사회복지사, 변호사</u>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경계선지능인이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④ <u>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는 경계선지능인 동료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계선지능인을 채용할 수 있다.</u>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력 배치 및 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 허영의원안과 권철승의원안에서는 중앙 및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각 제정안 간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규정 비교 >

구분		허영의원안	권철승의원안
중앙 경계선 지능인 지원센터	설치	의무 설치	의무 설치
	수행업무	-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연구수행 지원 - 경계선지능인 조기 진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경계선지능인이 이용 가능한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지원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침·편람 마련 및 교육지원 -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 개발 - 경계선지능인 권리침해의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 지원 -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연구수행 지원 - 경계선지능인이 이용 가능한 교육·취업·복지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침·편람 마련 및 교육지원 -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 경계선지능인 권리침해의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 지원 -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지원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분		허영의원안	권철승의원안
지역 경계선 지능인 지원센터	운영 및 예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u>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u> • <u>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함</u>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u>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u> •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u>
	설치	• 의무 설치(단, 시·군·구에 설치하는 경우는 재량)	• 의무 설치(단, 시·군·구에 설치하는 경우는 재량)
	수행업무	•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지원 정보 제공 및 연계 •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지원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상담·교육 지원 • 경계선지능인 조기진단 실시 및 지원 정보 연계 • 경계선지능인 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정보 관리 • 경계선지능인의 자조모임 지원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대한 사례관리 • 경계선지능인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 경계선지능인 권리침해 접수 및 지원 •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교육·취업·복지지원 정보 제공 및 연계 •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 경계선지능인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 축적 및 관리 • 경계선지능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 경계선지능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례관리 •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견과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 제12조에 따른 경계선지능인의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을 위한 사항

구분		허영의원 안	권칠승의원 안
		항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운영 및 예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u>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u>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u>비용을 지원</u>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u>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u>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이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로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접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전반적인 규율 방식과 수행업무 등은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 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발달장애인법」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발달장애인지원 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발달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보호자를 포함한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①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구수행 지원
2. 발달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침·편람 마련 및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5. 발달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6.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지원
7. 제9조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8. 발달장애인 권리침해의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의 지원
9. 제29조의3에 따른 최종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지원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 5의2. 제23조제3항에 따른 영유아 및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상담 지원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7.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 지원
8.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9.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10.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11. 제29조의3에 따른 최종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지원
1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발달장애인이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동료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력 배치 및 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허영의원안과 권칠승의원안**은 현행 「발달장애인법」을 상당 부분 차용하여 조문을 구성하였으나, 용어 사용에서 중앙과 지방센터를 모두 지칭하는 용어로서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사용한다는 원칙을 선언하는 표현이 없어 조 제목을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로 하는 것만으로는 그 의미가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가 중앙과 지방센터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규정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또한 **권칠승의원안**에서는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에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두도록 필요한 인력을 예시하고 있는데, 경계선지능인은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등을 통해 직업에 종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인노무사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그 외의 무적으로 배치할 직원의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보건복지부가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안상훈의원안**의 경우는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와 같은 별도 전달체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 발굴·서비스 연계 등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사례관리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안상훈의원안

- 제16조(협력체계 구축 및 사례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경계선지능인을 발굴하고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 대상, 정책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상훈의원안**의 취지는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에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계선지능인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한 민관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연계·제공하려는 것으로 보임.

7. 경계선지능인 및 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

허영의원안	권철승의원안
제22조(경계선지능인 교육운영위원회)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맞춤형 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둔다. ② 중앙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시·도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제23조(경계선지능학생 교육운영위원회)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맞춤형 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 시·도의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둔다. ② 중앙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시·도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 각 제정안 중 허영의원안과 권철승의원안에서는 경계선지능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과 시·도의 교육감 소속으로 각각 중앙 및 시·도경계선지능인(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제정안의 취지는 경계선지능학생의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문성을 갖춘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소속 중앙 및 시·도경계선지능인(학생)교육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통상적인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과 분리하려는 것으로 보임.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도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 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에 관한 사항은 일반 행정과 구별하여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하고 있음.²²⁾

□ 이러한 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기존 위원회 또는 새롭게 통합하여 신설되는 위원회가 담당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교육부**에서는 경계선지능학생위원회는 「기초학력 보장법」²³⁾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와 지원 대상과 내용이 중복될 수 있으며,

현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기본법」에 기존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를 포함한 ‘학교교육지원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고자 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제출, 의안번호 제2201999호)가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행정안전부**는 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는 경계선지능학생의

2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3) 「기초학력 보장법」 제6조(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3. 기초학력 보장 관련 제도 개선
4.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각종 조사·연구 및 정책의 분석·평가
5.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맞춤형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자문위원회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²⁴⁾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활용 또는 「특수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분과·전문위원회 또는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산하의 분과·전문위원회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경계선지능학생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는 근거 규정은 필요해 보이므로, 제정안과 같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경계선지능학생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어야 할 것임.

- 시·도의 경우는 기존의 관련 위원회가 담당할 수 없으므로, 근거 규정 신설이 필요할 것임.

2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8. 부칙

허영의원안	권칠승의원안	안상훈의원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각 제정안은 시행일에 관한 부칙을 두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아직까지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바, 이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전문가·이해당사자·관계부처 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설치(허영·권칠승의원안), 경계선지능인지원 정보시스템 구축(허영·권칠승·안상훈의원안), 경계선지능인 및 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허영·권칠승의원안) 운영 등에는 부처 간 협조, 시범사업, 예산배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적절한 유예기간이 필요해 보임.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

연 번	지 방 자 치 단 체	조 례 명
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2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4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5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6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7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11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12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13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1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1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16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1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춘천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18	충청북도	「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19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주 1):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하고 있지만, 이는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학교에 재학 중인 ‘학교 내 학생’에게만 특화된 조례라는 점에서 위 사례에서는 제외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main.html>) 검색 후, 재구성